

國內貯蓄과 減價償却制度의 活用

特別償却制度의 開發을 위한 國際比較를 中心으로

全 弘 強

〈全國經濟人聯合會 調査2課長〉

I. 머리말

우리나라는 1962년 5개년 單位의 經濟開發計劃을 착수한 이후 현재 1977~81년간의 第4次 經濟開發計劃을 계속 推進하고 있다. 이에 政策當局은 同期間中の 計劃目標達成을 위해 18조 81억원의 投資財源을 調達할 計劃을 세우고 있으며 이는 92.4%를 國內貯蓄으로, 이 國內貯蓄의 71.0%를 企業貯蓄으로 그리고 企業貯蓄의 71.4%를 減價償却資金으로 充당키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減價償却制度, 그 運用에 대한 政策의 비중과 기대가 대단히 크게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減價償却制度는 그 制度內容에 있어 產業政策機能은 물론 資金調達 등 金融機能面에서 미약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企業의 資金調達源泉으로서의 減價償却費의 기여율이 3次計劃期間(1972~76년)中の 平均이 14.0%에 불과한데 비하여 日本 16.8%(1972년), 美國이 48.3%(1973년), 英國은 21.2%(1972년), 西獨은 무려 73.6%나 되는 높은 實績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우리 經濟의 開發目標達成의 成敗가 期待貯蓄率의 시현에 달려 있고 또 이는 民間貯蓄→企業貯蓄→減價償却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할 때 減價償却制度의 經濟政策的 비중이 크게 提高되었다고 하겠다.

이런 背景下에서 企業貯蓄 증대에 의한 國內貯蓄目標 達成을 위한 한 방법으로서 減價償却制度運用의 적극화 方案研究의 一環으로 產業政

策이며 金融의 機能이 강한 特別減價償却制度의 開發과 그 機能의 高度化對策 摸索을 시도해 보려 한다. 이를 위해 먼저 1~4次 經濟開發計劃에 나타난 投資財源의 調達實績과 計劃狀況을 살펴 보고 減價償却制度의 金融實績을 알아 본 다음 현행 稅法上的의 特別償却制度를 紹介한데 이어 주요 先進國의 特別償却制度를 검토해 가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特別償却制度의 特徵과 그 開發·補完方案을 講究해 보고자 한다.

II. 投資財源의 調達과 減價償却의 비중

經濟의 成長發展을 計劃推進하기 위해서는 그 에 상응하는 投資財源이 절대 確保돼야 한다는 것은 再論의 여지가 없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經濟政策的의 기초를 포함하여 經濟開發計劃을 추진하고 있는 많은 國家들이 갖고 있는 開發政策的의 핵심은 投資財源의 調達의 효율화에 있지 않는가 한다. 곧 經濟開發計劃 추진의 成敗與否가 그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必要 投資財源은 國內貯蓄과 海外貯蓄資金으로 充當되고 있는데, 國內財源의 不足이 隘路部門으로 되고 있는 開發途上國家들은 海外貯蓄, 즉 外資의 도입에 크게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開發의 초기 段階에서는 外資의 효율적인 導入·運用이 보다 成長促進的이라는 점이 강조되고 있기조차 하다. 이는 단순한 資本의 도입만이 아니라 技術의 도입까지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經濟開發計劃의 推進過程도도 그 例外는 아니다. <表-1>에서 보는 바와 같이 第 1次 經濟開發 5 個年 計劃期間(1962~1966)中에 總投資率 17.3%를 示顯함에 있어서 國內貯蓄率 8.0%, 海外貯蓄率 8.3%의 실적을 보였는데 이는 總財源의 48.0%를 外資로 充當함으로써 國內貯蓄額의 比重 46.2%보다 1.8%「포인트」가 더 많은 구성비를 보인 것이다. 2次計劃期間(1967~1971), 3次期間(1971~1976)에도 海外貯蓄額의 絕對構成比는 國內貯蓄 規模에 비해 낮아지는 했으나 여전히 39.8%, 43.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사실 이와 같이 높은 海外貯蓄의 비중은 우리 經濟의 高度成長을 가능케 한 動因이 되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經濟開發·發展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外資의 과도한 의존이 반드시 所重스러운 것은

<表-1> 經濟成長率 및 投資貯蓄率推移 (單位:%)

	1962-66 平均	1967-71 平均	1972-76 平均	1977-81 ①平均
國民總生産 (實質成長率)	100.0 (7.7)	100.0 (10.5)	100.0 (11.2)	100.0 (9.2)
總投資	17.3	26.6	27.0	26.2
國內貯蓄	8.0	15.1	17.0	24.2
政府	1.2	6.1	4.1	5.9
民間	6.8	9.0	12.9	18.3
海外貯蓄	8.3	10.6	11.8	2.0
統計上 不一致	1.0	0.9	△1.8	—

資料: 內資動員 實務計劃班, 內資動員部門計劃
(1977~1981)

<表-2> 投資源의 調達(單位: 1975年價格, 10億圓)

	1981		1972~76		1977~81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金額	構成比
總投資 (投資率)	4,219.9	100.0 (26.0)	11,399.5	100.0 (27.0)	18,008.1	100.0 (26.2)
國內貯蓄	4,231.0	100.3	7,193.6	63.1	16,645.1	92.4
政府	994.8	23.6	1,729.8	15.2	4,057.2	22.5
民間	3,236.2	76.7	5,463.8	47.9	12,587.9	69.9
海外貯蓄 (百萬弗)	-11.1 (-23)	-0.3	4,971.9 (10,272)	43.6	1,363.0 (2,816)	7.6
統計上 不一致	—	—	-766.0	-6.7	—	—

資料: 前掲 同一

아니다. 外資는 곧 元利金の 辨濟가 불가피하고 國際收支의 惡化要因이 되며 成長의 果實을 海外에 流出해 버리는 要因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投資財源調達의 自力度 提高가 所望되고 있다 하겠고 우리도 이러한 政策基調를 세우고 있다 하겠다.

이에 政策當局은 금년부터 시작되는 第4次 5 個年計劃期間(1977~1981) 중에는 總投資率 26.2%를 달성하는데 있어, 海外貯蓄率을 2.0%로 축소하고, 海外貯蓄額의 비중을 7.6%에 그치게 하려하고 있다. 즉 投資財源의 자립도를 92.4%로 올리고자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投資資金의 92.4%를 國內貯蓄으로 充當하려고 하는 政策的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것은 國際經濟의 與件, 國際金融動向 등을 감안해 볼 때 일단 所望스러운 方向定立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를 위한 앞으로의 문제는 國內貯蓄을 여하히 달성하느냐 하는 방법에 있지 않나 한다. 현재 政策當局은 4次 5 個年計劃期間中에 9.2%의 實質成長率을 실현하기 위해 75年 價格 기준으로 總 18조 81 億圓의 內·外資를 동원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것은 3次計劃期間中의 總投資額 11조 3,995 億圓에 비하여 무려 58.0%가 增大된 수준이며, 國內貯蓄 16조 6,451 億圓, 海外貯蓄 1조 3,630 億圓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內資動員 國內貯蓄의 圓滑化, 그 與否가 문제시되는 점의 다른 하나는 4次期間中의 同規模 16조 6,451 億圓이 3次期間의 7조 1,936 億圓에 비해 무려 2.3 倍로 急増한 것이다. 이 반면에 海外貯蓄額은 3次期間에 비해 오히려 72.6%가 減少된 규모이다. 이렇게 볼 때 內資의 차질 없는 動員이 4次計劃의 目標達成을 위해 기필코 실현돼야 할 주요 政策課題로 臺頭되었다고 하겠다.

이러한 「國內貯蓄」의 源泉은 民間貯蓄과 政府貯蓄으로 구성되며 民間貯蓄은 다시 企業貯蓄과 家計貯蓄으로 充當되고, 企業貯蓄은 內部留保(純貯蓄)와 減價償却費에 의해 조달된다. 國內貯蓄은 그 源泉別 構成內譯을 볼 때 <表-3>에 나타난 바와 같이 企業貯蓄과 家計貯蓄으로 형성되는 民間貯蓄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 民間貯蓄額의 構成比가 1次期間 89.9%, 2次期間 60.0%, 3次

〈表-3〉 國內貯蓄의 源泉別構成比 (單位:%)

	57~61	62~66	67~71	72~76	77~81
國內貯蓄	100.0	100.0	100.0	100.0	100.0
民間	162.0	89.9	60.0	76.0	75.6
企業	130.3	105.8	49.9	52.4	51.0
家計	32.5	-15.9	10.1	23.6	24.6
政府	-62.5	10.1	39.8	24.0	24.4

資料: 前掲 同一

期間에는 76.0%를 보이는데 이어 1977~81年間の 4次期間에도 75.6%의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民間貯蓄」은 企業貯蓄에 의해 또한 주도되고 있다. 3次期間中の 企業貯蓄額은 3조 7,695 억원으로서 民間貯蓄額 5조 4,638 억원의 69.0%에 해당하며 4次期間中에도 역시 8조 4,924 억원으로서 67.5%의 구성비율을 보이고 있다(〈表-4〉 참조).

또한 이러한 「企業貯蓄」은 企業의 純貯蓄과 減價償却으로 구성되는데, 이에서는 減價償却이 主要源泉으로 되고 있다. 〈表-4〉에서와 같이 3次期中의 減價償却의 企業貯蓄에 대한 구성비는 77.4%를 보이고 있으며 4次計劃期間中에는 減價償却이 6조 626 억원으로 企業貯蓄 8억 4,924 억원의 71.4%를 점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해 보면 4次5個年計劃期間中の 원활한 投資財源調達, 즉 計劃의 成功的 遂行·開發目標의 달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民間

貯蓄을 效率的으로 조달할 수 있어야 하고, 또 이를 위해서는 企業貯蓄의 能率化 方案摸索이 소망되며, 아울러 이는 減價償却制度의 積極的인 運用으로서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하겠다. 다시 말하면 投資財源의 원활한 확보는 民間貯蓄→企業貯蓄→減價償却으로 연결되는 일련의 資金動員計劃과 이를 뒷받침할 유용한 制度開發이 있어야만 可能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結局, 減價償却을 통한 投資財源의 確保問題가 重要政策課題로 부각되고 있다 하겠으며, 이에 直接關係를 갖고 있는 企業의 積極적 參與와 이를 支援할 效果的인 制度의 開發이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Ⅲ. 減價償却制度와 그 貯蓄機能

일반적으로 企業貯蓄은 企業의 內部留保에 의한 純貯蓄과 固定資産의 減價償却費의 積립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으며, 4次5個年計劃도 이러한 一般例에 의해 投資財源調達——企業貯蓄動員計劃을 세우고 있다 하겠다. 특히 이 貯蓄要素 가운데 減價償却은 가장 自己 金融機能이 強하고 이 자체가 産業 政策的의 波及效果를 갖는다는 점에서 世界 各국에서 이를 幅넓게 이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이제까지 우리의 減價償却制에 대한 利用實績을 보면 외국 다른 나라에 비해 低調한 상태에 있다. 그런데 減價償却은 損益計上에 있어

〈表-4〉

國內貯蓄의 構成

(單位: 1975年價格, 10億원)

	77	78	79	80	81	72~76	77~81
國內貯蓄	2,532.1 (22.0)	2,874.0 (23.0)	3,278.5 (24.0)	3,729.5 (25.1)	4,231.1 (26.1)	7,193.6 (17.0)	16,645.1 (24.2)
民間貯蓄	1,902.7 (16.5)	2,142.0 (17.1)	2,476.7 (18.1)	2,830.3 (19.1)	3,236.2 (20.0)	5,463.8 (12.9)	12,587.9 (18.3)
企業貯蓄	1,298.7 (11.3)	1,474.0 (11.8)	1,673.0 (12.3)	1,897.2 (12.8)	2,149.5 (13.3)	3,769.5 (8.9)	8,492.4 (12.3)
純貯蓄	356.1 (3.1)	413.2 (3.3)	477.7 (3.5)	550.4 (3.7)	632.4 (3.9)	851.7 (2.0)	2,429.8 (3.5)
減價償却	942.6 (8.2)	1,060.8 (8.5)	1,195.3 (8.8)	1,346.8 (9.1)	1,517.1 (9.4)	2,917.8 (6.9)	6,062.6 (8.8)
家計貯蓄	604.0 (5.2)	668.0 (5.3)	803.7 (5.9)	933.1 (6.3)	1,086.7 (6.7)	1,694.3 (4.0)	4,095.5 (6.0)
政府貯蓄	629.4 (5.5)	732.0 (5.8)	801.8 (5.9)	899.2 (6.0)	994.8 (6.1)	1,729.8 (4.1)	4,057.3 (5.9)

資料: 前掲 同一

註: ()는 對 GNP 率임.

<表-5>

企業貯蓄率의 推移와 國際比較
(經常價格: 對國民總生產率)

(單位: %)

	韓 國				外 國 例 (1962~66 平均)			
	62~66 平 均	67~71 平 均	72~76 平 均	77~81 平 均	日 本	美 國	英 國	프랑스
企業總貯蓄率	7.3	7.2	8.9	12.3	16.6	13.0	12.3	13.3
純貯蓄率	2.4	1.5	2.0	3.5	4.1	3.2	4.7	3.5
固定資本消耗充當金	4.9	5.7	6.9	8.8	12.5	9.8	7.6	9.8

資料: 前掲 同一

當局의 配當政策 등 經營政策에 의해 좌우되는 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지 않고 단순한 實績比較만으로서는 다소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하겠으나 일반적으로 볼 때 각국의 減價償却制度에는 많은 特例措置를 부여하고 있어서 이를 企業貯蓄의 方法으로 많이 選好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償却費 및 GNP 에 대한 償却額의 비율로 企業貯蓄의 多寡와 金融機能을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減價償却 制度의 貯蓄機能이 우수하다 하더라도 이것을 일시에 期待水準으로 제고시키기란 어려운 일이며 벽찬 과제이기도 하다. 이것은 過去의 실적이 이를 말해 주고 있다. <표-5> 企業貯蓄率의 推移에 잘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企業貯蓄率(貯蓄額의 對 GNP 比率)이 1次期間中에는 7.3%, 2次期間 7.2%, 3次期間 8.9%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各國의 예를 보면 1962~66年의 平均 企業貯蓄이 日本 16.6%, 美國 13.0%, 英國 12.3%, 프랑스 13.3%의 높은 水準에 있는 것이다.

한편 이와 같이 우리의 企業貯蓄이 저조함에 따라 減價償却額의 對 GNP 比率도 微微할 수밖에 없는 實情에 있다. 즉 이는 1次期間 4.9%, 2次期間 5.7%, 3次期間 6.9%에 不過한 것이다. 이에 비해 日本은 12.5%, 美國 9.8%, 英國 7.6%, 프랑스 9.8%로서 우리의 企業貯蓄率을 上廻하는 높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

이제 우리나라는 4次期間中에 企業貯蓄率을 12.3%로, 償却額의 對 GNP 率을 8.8%로 上向 調整코자 하고 있다. 또한 企業資金의 調達源泉으로서도 減價償却의 기능은 제외국에 비해서 미약한 상태에 있다. 韓國銀行이 集計發表

<表-6> 우리나라 企業資金 調達狀況
(製造業) (單位: %)

	71	72	73	74	75	76
自己資金	17.2	51.8	39.5	28.8	27.1	36.2
內部留保	-5.3	-14.7	15.9	6.2	6.9	11.1
減價償却費	13.6	18.4	13.9	12.0	11.9	14.2
他人資金	82.8	48.2	60.5	71.2	72.9	63.8
長期借入金	37.3	41.3	16.9	22.7	23.0	20.9
短期借入金	22.8	-11.2	19.3	25.3	11.1	20.5
買入債務	12.8	9.0	5.9	12.9	19.5	6.7
其 他	9.8	9.1	18.3	10.3	19.3	15.8
合 計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資料: 韓國銀行「기업경영분석」各年度分

한 바에 의하면 3次期間中の 年평균 기여율은 14.1%에 불과한 실정인 것이다. 1972年度에는 18.4%의 비교적 높은 기록을 보이기도 했으나 11.9%~18.4%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表-6> 참조).

이에 비하여 1972年, 1973年 兩年度에 있어 日本의 경우는 각각 16.8%, 11.2%를 보이고 있으며, 美國은 42.4%, 48.3%의 높은 실적을 示顯하고 있고, 英國이 21.2%, 18.2%의 기록을 보이고 있으며, 西獨은 그 중 가장 높은 60.6%, 73.6%의 좋은 기록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減價償却機能은 企業金融面에서나 資金調達面에서 이에 기대하는 만큼은 未洽한 실정에 있다고 하겠다. 앞으로 4次5個年期間 동안의 投資財源의 確保를 위한 企業資金의 효율적인 調達·企業貯蓄率의 達成을 위해서는 減價償却 制度의 運用 積極化를 기할 수 있는 制度開發·補完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表-7>

主要工業國의 資金調達狀況

(單位: %)

區分	日 本		美 國		英 國		西 歐	
	1972	1973	1972	1973	1972	1973	1972	1973
內 部 資 金	(31.6)	(20.2)	(55.6)	(48.0)	(44.0)	(47.7)	(73.6)	(85.2)
內 部 留 保 金	14.9	9.0	13.2	9.7	22.9	29.5	13.0	11.6
減 價 償 却 費	16.8	11.2	42.4	48.3	21.2	18.2	60.6	73.6
外 部 資 金	(68.4)	(79.8)	(44.4)	(52.0)	(56.0)	(52.2)	(26.4)	(14.8)
株 式	2.9	0.9	11.6	4.2	2.4	1.9	12.1	8.9
社 債	4.4	2.7	9.3	15.4	15.9	3.6		
銀 行 借 入 金	24.8	21.8	16.9	18.5	11.0	2.0	14.3	9.5
其 他	36.2	54.4	6.6	13.9	26.7	44.7		

資料 (1) 日本……主要企業經營分析(日銀)의 全企業
 (2) 美國……Survey of Current Business (農業, 金融業 除外)
 (3) 英國……企業經營分析(三菱經濟研究所), Economist 에 의거 三菱經濟研究所에서 作成
 (73年은 資料의 制約으로 同研究所의 調査對象企業 31社에 의뢰 作成한 것임)
 (4) 西獨……Wirtschaft und Statistisches Bundesamt

IV. 우리나라의 特別減價償却制度

減價償却制度의 運用效果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同制度의 一般의인 內容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이 있어야 할 것이다. 즉, 償却資產의 耐用年度의 長短, 償却範圍額의 결정과 取得價額의 計算問題, 減價償却의 계산방법(定額法·定率法·生産高比例法 등)의 여하, 償却是認不定額의 迫認問題, 即時償却의 範圍, 中古資產의 耐用年度 調整, 그리고 特別減價償却制度 등이 給合考察되어야 할 事項들이다.

그러나 本稿에서는 特別償却制度의 內容에 대해서만 검토해 보기로 하고, 現行 法人稅法上에서 인정하고 있는 制度를 살펴 보기로 한다. 일반적인 特別償却制度의 適用方法에는 割增償却方法, 初年度特別償却方法, 陳腐化一時償却方法 및 均等償却方法, 自由償却方法 등이 있다.

「割增償却方法」은 가장 普遍的인 特別償却方法으로서 우리가 보통 「特別償却」하면 이 割增償却方法을 지칭하고 있는데, 이는 固定資產의 耐用年數에 기초하여 計算한 普通償却額에 一定比率을 곱하여 계산 全額을 償却額에 더하여 償却處理하는 방법이다.

다음 「初年度特別償却方法」은 일반적으로 普通償却額에 同資產의 取得價額에 一定率을 곱하여

계산한 잔액을 普通償却額에 더하여 償却處理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國家에 따라서는 普通償却은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制度는 割增償却方式에 비하여 보다 金融機能이 강하기 때문에 投資促進을 위한 產業政策的 見지에서 널리 活用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試驗用 研究施設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있다(法令 51條 ①項 6號).

「陳腐化一時償却制度」는 技術의 進步 등에 의하여 陳腐化된 償却資產에 대하여 未償却殘額과 帳簿價와의 差額을 일시에 상각할 수 있는 制度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1976年度에 導入하였다(法令 56條 ④項).

그리고 「均等償却方法」은 耐用年數의 短縮效果를 갖게하는 制度로서 美國에서 많이 運用되고 있다.

한편 「自由償却制度」는 英國의 特別減價償却制度에서 볼 수 있는 독특한 制度로서 移越資產의 合計處理方式과 같이 기업이 임의로 償却處理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이제 우리나라의 特別減價償却制度의 內容을 살펴 보자.

1. 割增償却方式에 의한 特別償却

① 鑛業 또는 製造業에 直接使用되는 機械設備로서 年平均 每日 12時間 以上(公休日 除外) 使用된 것에 對해 20%(法令 51-①-1, 法則 29-④)

② 建設業을 經營하는 法人이 國土建設工事に 직접 사용하는 重機械裝備로서 年平均 매일 12 時間 사용한 것에 대해 20%를 適用할 수 있는데, 단 이는 財務部令이 정하는 重機로서 그 사업을 발주한 官署의 長이 確認한 것에 限한다(法令 51-①-2, 法則 29-⑤).

③ 鑛業, 水産業 또는 製造業을 영위하는 法人이 輸出事業 및 觀光事業法에 의하여 登錄한 觀光宿泊業에 직접 사용하는 固定資産에 대해 적용하는데, 輸出事業 또는 觀光宿泊業의 業種別 輸入金額이 總收入金額의 50% 이상인 때에는 30%, 이것이 50% 미만인 때에는 普通償却額의 30% 相當額에 外資收入 金額과 總收入金額과의 比率의 2 倍를 곱하여 얻은 금액으로 한다(法令 51-①-3, 法則 29-①, 1977年 8月 20日 一部 改正, 補完).

④ 綠色申告法人이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事業別 固定資産에 대해 20%(法令 51-①-4).

⑤ 中小企業에 해당하는 製造業 또는 鑛業에 직접 사용하는 機械設備에 대해 50%의 特別償却을 허용한다(法令 51-①-5, 法則 29-⑥). 이 때 中小企業이라 함은 固定資産總額이 2 億원 이하인 法人을 말한다(法令 51-②).

⑥ 海外建設促進法에 의한 海外建設業 면허를 받은 法人이 海外建設工事に 투입하는 重機械 장비에 대해 30%(法令 51-①-2의 2, 1977年 8月 20日 新設, 1977年 7月 1日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事業年度分부터 適用함).

2. 初年度特別償却制度에 의한 特別償却

① 技術의 開發을 위한 研究, 試驗用 施設에 대해 1회에 한하여 取得價額의 50%를 適用, 償却處理할 수 있는데 이때 普通償却은 허용되지 않는다(法令 51-①-6, 法則 29-⑥).

3. 陳腐化 一時償却制度에 의한 特別償却

① 施設의 改替 또는 技術의 落後로 인하여 事業別 固定資産의 一部를 폐기한 경우에는 當該 資産의 帳簿價額과 殘存價額의 差額의 範圍內에서 그 事業年度의 損金에 一時에 算入할 수 있다(法令 56-④, 1976年 12月 31日 新設).

4. 租稅減免規制法에 의한 特別償却

① 重要産業(租減法 4의 8-②)을 영위하는 內國法人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投資(租減令 9-①)

에 의하여 建設 또는 施設된 事業用 資産에 대하여는 普通償却額의 100%를 減價償却費로 허용한다(租減法 4의 8-①-3). 그런데 이는 普通償却額의 一定額을 追加하여 償却處理하는 割増償却制度와는 달리 단순히 普通償却範圍額의 100%만을 償却處理토록 함이 特異하다고 하겠다.

이상 현행 法人稅法 및 租稅減免規制에 規定하고 있는 特別償却制度의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이들 가운데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選擇하여 適用토록 하고 있다(法令 51-①, 단서). 즉 上記 1의 ③~⑤ 및 2(法令 51-①-3~6의 2)의 各 規定과 4(租減法 4의 8)의 規定中 2 以上에 該當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하나만을 選擇·適用하도록 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特別償却制度의 制度的 特徵을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겠다. 첫째 特別償却方式으로는 割増償却方式이 주로 채용되고 있다. 둘째 特別償却率이 初年度特別償却率 및 「重要産業」의 投資에 대한 상각률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20%~30%의 저조한 수준에 있다. 이는 첫째의 制度內容과 關聯시켜 생각해 볼 때 先進外國의 例에 비추어 償却制度의 自己金融機能에도 未洽하고, 同制度가 갖는 産業政策效果의 提高라는 면에서도 微弱하다 하겠다. 셋째, 特別償却對象이 先進外國에 비하여 業種別 事業用 固定資産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租稅制度의 社會政策的 機能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V. 先進諸國의 特別減價償却制度

日本을 비롯하여 美國, 英國, 西獨, 프랑스, 캐나다 등의 特別償却制度의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日本의 特別償却制度

<1> 特定設備에 대한 特別償却

이는 靑色申告法人에 대하여 그 취득한 해에, 그 特定設備의 普通償却限度額에 그 取得價額에 一定比率을 곱하여 계산한 金額을 더하여 償却處理토록 하는 제도인데 具體的인 償却對象은 다음과 같다.

① 公害防止를 위한 減價償却資産; 取得價額의 $\frac{1}{3}$ (단, 中小企業에 대하여는 3年間 各年度 30%의 均等償却制度和 選擇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② 無公害化를 위한 生産設備; 取得價額의 25%,

③ 地下水 使用規制地域內에 있는 우물로부터 取水施設을 工業用水의 利用施設로 改替한 경우 그 施設; 取得價額의 25.0%,

④ 火災, 石油콤비나트에 있어 石油 등에 의한 人身의 被害 또는 勞動災害防止를 위한 減價償却資産; 取得價額의 25.0%.

⑤ 廢棄物 再生處理用的 機械設備; 取得價額의 25.0%

⑥ 에너지 節約을 위한 機械設備; 取得價額의 25.0%.

⑦ 法令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긴요한 일정의 檢査用 機械設備; 取得價額 25.0%.

⑧ 流通의 合理化, 良質住宅의 供給 기타 國民生活의 安定·向上에 직접 기여하는 機械設備; 取得價額의 20.0%.

⑨ 特定の 電子計算機; 取得價額의 20%.

⑩ 地方鐵道事業 또는 軌道事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都市交通難 완화를 위한 線路設備 등; 取得價額의 20.0%.

⑪ 電氣事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原子力發展設備 가운데 原子爐, 터빈, 發電機, 其他의 기계장치; 取得價額의 20.0%.

⑫ 가스事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大都市, 特定の 中間都市 및 그 周邊地域에 대한 特定の 가스供給設備; 取得價額의 20.0%.

⑬ 海上運送事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船舶; 取得價額의 20.0%.

⑭ 定期航空運送事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大型航空機; 取得價額의 20.0%.

⑮ 中小小賣商業振興法에 根基, 高度化事務計劃에 의해 設置된 共同利用施設 및 一定의 店舗用 建物 등; 取得價額의 10%,

〈2〉 低開發地域의 工業用 機械 등에 대한 特別償却

이는 靑色申告法人으로서 低開發地域, 過疎地域, 農村地域, 産炭地帶 또는 自由貿易地域의 振

興을 위해 당해 開發地域으로 指定된 후 각각 16年, 9年, 18年, 5年以內에 700萬圓 이상의 償却資産을 新設·增設한 경우; 初年度 取得價額의 25.0%, 建物 및 附屬設備에 대해서는 6분의 1의 特別償却을 허용한다.

〈3〉 中小企業者の 機械 등에 대한 特別償却

靑色申告法人인 中小企業者 또는 農業協同組合 등이 1972年 4月 1일부터 1979年 3月 31日間에 製造業, 建設業, 農林漁業, 鑛業 등에 供하는 機械裝置를 設置한 경우; 取得價額의 20.0% (但 1978年 4月 1日 以後는 6분의 1)의 特別償却을 허용한다.

이 때 1臺 또는 1基의 取得價額이 50萬圓 이상이어야 하며, 1978年 4月 1日 以後에는 70萬圓 이상으로 한다.

〈4〉 中小企業 構造改善計劃을 실시하는 商工組合 등의 構成員에 대한 割増償却

機械 및 裝置, 工場用建物 및 기타의 附屬設備 등에 대하여 5年間 普通償却限度額의 50%를 特別償却한다.

〈5〉 纖維工業構造改善計劃을 實施하는 特定組合의 構成員에 대한 割増償却

機械裝置 및 工業用的 建物·附屬設備 등에 대해 普通償却限度額의 50%를 特別償却할 수 있는데 1979年 3月 31日까지 적용된다.

〈6〉 中小漁業構造改善計劃을 實施하는 漁業協同組合 등의 構成員에 대한 割増償却

漁船에 대하여 1978年 3月 31日까지 當該事業을 인정 받은 5年間 普通償却額의 50%에 대하여 割増償却을 허용한다.

〈7〉 障害者를 雇傭하는 경우의 割増償却

1973年 4月 1일부터 1979年 3月 31日까지의 指定期間內에 20% 이상의 장애자를 고용한 경우, 機械 및 장치, 造船臺, 工場用的 建物 및 附屬設備 등에 대해,

普通償却限度額의

$$25\% \times \frac{\text{當該事業年度の 指定期間の 月數}}{\text{當該事業年度の 月數}}$$

限度로 割増償却을 허용한다.

〈8〉 新築貸家住宅 등에 대한 割増償却

1972年 4月 1日~1975年 3月 31日 間에 新築한 貸家住宅에 대해 貸家에 供한 때부터 5年間에 걸

쳐 普通償却限度額의 100%를 割増償却(但 法定耐用年數가 45年 이상의 것은 150)할 수 있다.

한편 店舖 등 併設住宅에 대해서는 40%의 割増償却을 허용한다.

〈9〉 特定備蓄設備 등에 대한 割増償却

石油精製法人 및 石油基地法人 등이 1974年 4月 1日~1979年 3月 31日 間에 取得한 原油貯藏에 供하는 6萬 m³ 이상의 貯油槽, 1974年 4月 1日~1978年 3月 31日 間에 取得한 一定規模 이상의 倉庫用建物 및 容積 2,200 m³ 이상의 穀物用 싸이로 등의 備蓄施設에 대하여 普通償却限度額의 $\frac{2}{5}$ (단 石油貯藏 施設은 50%)의 割増償却을 허용하고 있다.

〈10〉 鑛業用 坑道 등의 特別償却

鑛業을 영위하는 法人의 坑道 및 小型機械 등에 대해 取得價額의 100%를 損金算入하고 있으며 通氣坑道 및 排水坑道에 대해 20%의 割増償却을 협정하고 있다.

〈11〉 造林費의 特別償却

森林施業計劃에 의해 計劃伐採를 하는 森林所有者 등에 대한 당해 機築物에 대한 取得價額의 25%를 特別償却할 수 있게 하고 植林費에 대해서는 支出金額의 3분의 1을 損金算入할 수 있도록 하였다. 기타 事業을 轉換하는 特定의 中小企業者 등의 施設償却에 대한 特例措置가 마련되어 있다.

〈12〉 陳腐化 一時償却制度

技術의 進歩 등에 의해 陳腐하게 陳腐化된 償却資産에 대하여는 승인을 받았던 使用可能期間을 기초로 하여 計算한 未償却殘額과 簿價와의 차액을 一時 償却處理할 수 있다.

이상에서 日本의 現행 稅法(法人稅法, 租稅特別措置法)에 의해 特別減價償却制를 살펴 보았는데 이는 원칙적으로 靑色申告法人에 限하여 適用되며, 重複하여 適用하지 못한다. 그리고 特別償却限度額의 부족액에 대하여는 3年間 移越認定되고 있다.

한편 日本 特別償却制度의 制度的 特徵을 요약해 보면, 첫째 適用對象法人을 靑色申告法人에 限定하고 있는 점인데, 租稅의 自進申告納稅風土를 同時에 造成誘引하기 위한 政策 配慮라고 하

겠다. 둘째, 適用對象이 우리 나라의 制度와 比較해 보면 매우 다양하고 廣範圍하다는 점이다. 셋째, 初年度特別償却制度가 割増償却制度보다 더 一般的으로 채용되고 있어 우리 나라와는 正反對 立場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네째, 償却額計算, 즉 特別償却에 있어 매우 과감하다는 점이다. 우리 나라는 「普通償却의 限度金額」에 대하여 適用하고 있음에 비하여 대부분 「取得價額」을 기준으로 하여 償却處理토록 하고 있다.

이 경우 償却率이 100%에서부터 보통 25%線이 되고 있다. 특히 「割増償却」의 경우에는 50.0%가 보통이며, 150%까지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時限法으로 많이 適用하고 있음이 또한 特徵의이라고 하겠다.

2. 西獨의 特別償却制度

① 住居用建築物에 대한 特別償却

1965年 이후에 着工申請한 것으로서 建築後 8년간은 建築費의 5%(最高限度 15萬마르크)를 定額償却, 그 이후는 未償却殘額의 2.5%를 定額償却한다.

② 工業用 建物, 倉庫 및 農業用建物에 대한 特別償却

避難民 및 나치에 의해 迫害, 追放을 받은 자는 製造·加工, 貯藏用 시설에 대해서 一般償却外에 건축한 해와 그 翌年度에 각각 建築價額의 10%를 特別償却할 수 있다.

③ 農林業用資産에 대한 特別償却

일정의 資産에 대해서 一般償却外에 取得年度 및 그 翌年度에 각각 動産 50%, 不動産 30%의 特別償却을 허용하고 있다.

④ 汚水損害防止 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直接 汚水에 의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에 대해서 一般償却外에 5年間에 걸쳐 動産 50%, 不動産 30%의 特別償却을 認定하고 있다.

⑤ 鑛山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一定의 鑛山施設에 대해서 一般償却外에 5年間에 걸쳐 動産 50%, 不動産 30%의 特別償却을 할 수 있다.

⑥ 大氣汚染防止 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一般償却外에 5年間에 50%의 特別償却을 容認하고 하고 있다.

⑦ 住宅附屬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승이 정하는 住宅의 附屬施設에 대해서 一般償却 대신에 10年間に 각 10%의 特別償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⑧ 醫療病院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一般償却外에 取得年度 및 그 翌年度에 動産 50%, 不動産 30%의 特別償却을 할 수 있다.

⑨ 研究開發用 資産에 대한 特別償却

일정의 研究開發用 資産에 대해 一般償却外에 5年동안 動産 50%, 不動産 30%의 特別償却을 할 수 있다.

⑩ 騒音防止用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一定的 騒音防止用施設에 대해 一般償却外에 5年間に 動産 50%, 不動産 30%의 特別償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⑪ 外航船舶에 대한 特別償却

一般償却外에 5年間に 30%의 特別償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⑫ 航空機에 대해서 一般償却外에 5年間に 30%의 特別償却을 할 수 있다.

⑬ 베르린에 있는 住宅 등의 資産에 대해서 一般償却에 대신하여 住宅에 대해서는 3年間 50%의 特別償却과 기타 一定的 經濟財에 대해서는 3年間 75%의 特別償却을 허용하고 있다.

⑭ 東獨境界地域에 대한 投資資産에 대하여 一般償却外에 5年間に 動産 50%, 不動産 30%의 特別償却을 인정하고 있다.

⑮ 陳腐化資産에 대한 特別償却制度

技術革新 등에 의해 陳腐화된 減價償却資産에 대하여는 통상보다 높은 상각이 용인되고 있다.

이상에서 현행 西獨의 特別償却制度를 살펴 보았는데 이 특징은 첫째, 우리나라의 制度와 같이 割増償却方式을 特別減價償却制로 活用하고 있는 점이다. 둘째, 特別償却率은 대략 30~50%의 높은 水準에 있다. 셋째, 特別償却의 適用期間을 대체로 5年으로 하고 있다. 넷째, 그 償却資産과 關聯한 不動産만이 아니라 動産도 償却對象으로 하고 있음이 특이한 사항이라고 하겠다.

3. 美國의 特別償却制度

① 初年度 特別償却制度

耐用年度 6年 이상의 資産(建物·無形固資産

을 除外)에 대해서 價格 1萬 달러 이하의 部分에 대해 初年度에 20%의 追加償却을 인정하고 그 잔액에 대해서는 普通償却方式에 의한다.

② 公害防止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一定的 公害防止施設에 대해서 一般償却方式에 대신하여 60個月(5年)의 均等償却方式을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③ 鐵道車輛의 特別償却

74年 이전부터 사업에 사용된 일정의 鐵道車輛에는 一般償却方式에 대신하여 60個月(5年)의 均等償却方法을 選擇的으로 적용할 수 있다.

④ 炭鑛保安設備의 特別償却

1974年 이전부터 사업에 사용된 一定的 炭鑛保安設備에 대해서 一般償却方式에 대신하여 60個月(5年)의 均等償却方式을 選擇的으로 適用할 수 있다.

⑤ 職業訓練施設의 特別償却

被傭者에 대한 職業訓練施設의 建設費 등에 대해서 그것이 1976年 以前에 支出된 것인 때에는 一般償却 대신에 60個月의 均等償却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 保育施設의 特別償却

被傭者의 子女에 대한 保育施設의 建設費 등에 관해서 그것이 1976年 以前에 支出된 것인 경우에는 일반의 償却 대신에 60個月의 均等償却을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상에서 美國의 特別減價償却制의 내용을 살펴 보았는데 이의 制度的 特徵은 첫째, 60個月(5年)의 均等償却 制度가 特別償却 制度의 主內容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耐用年度를 短縮하고 定額償却法의 效果를 내게 하는 方式으로서 一般償却方式과 選擇的으로 適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둘째, 美國의 特別償却制度는 日本, 西獨 등과 비해 볼 때 극히 단순하다는 점이 特異하다고 하겠다. 셋째, 特別償却의 對象이 社會福祉의 觀點에서 선정되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예전대 公害防止施設, 職業訓練施設, 保育施設, 炭鑛保安施設 등이 그 예이다.

4. 英國의 特別償却制度

① 初年度特別償却制度

다음 項目에 해당하는 資本의 支出에 대해서는

보통의 償却外에 초년도에 特別償却이 認定된다.

즉 ㉠ 新規營業用 建物 50%, 단 營業用建物에 관계된 斷熱工事に 대한 資本的 支出에 대해서는 100%, ㉡ 開發地域 및 북 아일랜드에 있는 鑛業用·油井用施設 100%, 기타 지역 40%.

② 自由償却制度

1965年 4月 6日 이후에 취득한 新規船舶에 대해서는 自由償却制度가 許容된다.

③ 試驗研究用 施設 등의 初年度償却

1962年 11月 6日 이후의 試驗研究를 위한 資本的 支出에 대해서 초년도에 100%의 特別償却이 인정된다.

④ 營業用機械設備에 대한 初年度償却

1970年 10月 27日 이후 開發地域에서 취득한 新規産業用 機械設備에 대해서는 초년도에 100%의 償却을 할 수 있다. 단 1972年 3月 22日 이후 取得分에 대해서는 地域을 區分하지 않고 初年度 100%의 特別償却을 허용하고 있다.

이상이 英國의 現行 特別償却制인데 償却對象 그 制度 內容이 극히 單純하다는 점이 特徵的이라 하겠으며, 또 自由償却制度는 英國만의 有一 制度라는 점이 特異하다. 아울러 地域別로 差等を 두고 償却率을 달리하고 있음도 異色的이라 하겠다. 한편 特別償却率이 40~100%로 매우 과감한 점이 눈에 띈다.

5. 캐나다의 特別償却制度

① 特定船舶에 대한 特別償却

캐나다에서 건조된 一定條件을 가진 船舶에 대해서 3分の1(一般은 15%)의 定率性에 의해 償却處理할 수 있다.

② 水質汚濁防止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1965年 4月 27日 이후 1973年末 間에 水質汚濁防止를 위해 취득한 資産에 대하여 매년 取得費用의 50%를 限度로 償却할 수 있다.

③ 大氣汚染防止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1970年 3月 12日 이후 1973年末 사이에 大氣汚染防止를 위해 취득한 資産에 대하여 每年取得費用의 50%를 限度로 償却處理할 수 있다.

④ 新規開發鑛山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新規開發鑛山에 대한 建物, 鑛業用機械裝置, 輸送用 施設 등에 대하여 30%의 定率法으로 償

却處理할 수 있다.

⑤ 製造 加工業用 機械·施設에 대한 特別償却
1972年 5月 9日 이후 1974年末 사이에 取得한 製造·加工業用의 機械 施設에 대해서 每年 取得費用의 50%를 限度로 償却할 수 있다.

6. 프랑스의 特別償却制度

◎ 初年度 特別償却制度

다음의 施設에 대해서 初年度에 소정의 비율에 의해 特別償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初年度에 있어 普通償却은 特別償却後의 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計算된다.

① 工業用水淨化施設(建物·構築物) : 50% (75年 12月 31日 이전에 建設된 시설에 限한다)

② 大氣汚染防止 및 臭氣防止 施設(建物, 構築物) : 50% (1975年 12月 31日 이전에 建設된 施設에 限한다)

③ 科學技術研究用 建物, 設備 및 機械 : 50%

④ 商·工業用 施設(建物 및 構築物) : 25% (1975年 12月 31日 以前에 建設된 施設로서 政府의 特別承認을 얻은 것에 限한다. 特別承認은 低開發地域에 대한 投資 등에 주어지는 것이다)

이상이 현행 프랑스의 特別償却制度의 內容인데 전체가 初年度特別償却 方式을 擇하고 있으며, 상각률이 거의다 50%로 과감하다는 것이 특징적이며, 캐나다와 같이 特別償却 대상이 簡單하다는 점 역시 특이하다 하겠다.

V. 맺는 말

(特別償却制度 開發의 基本方向)

이상에서 우리나라의 特別減價償却制를 비롯하여 日本, 西獨 등 先進諸國의 현행 特別償却制度에 대한 內容을 살펴 보았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나라 制度를 기준해서 諸外國의 制度的 特성을 비교해 보면 몇 가지 特徵의 사실을 發見·認知할 수 있겠다.

첫째, 우리나라의 制度는 産業別로 普遍的인 加速償却만의 許容, 즉 단순한 投下資金의 早期回收에 그 정책적인 重點을 두고 있다 할 수 있는데 비하여 先進諸國의 그것은 우리나라의 제도가 갖고 있는 정책 趣旨의 충족은 물론, 租稅制

度의 社會政策的이며 產業政策的이고, 福祉政策的인 기능을 동시에 提高·達成코자 하는 복합성을 띄고 있다고 하겠다.

그것은 거의 모든 국가가 特別償却 對象으로 채택하고 있는 水質·空氣汚染 등의 公害防止를 위한 公害防止施設에 대한 特別償却을 비롯하여 障害者를 고용하는 施設에 대한 特別償却(日本), 鑛山保安施設(美國), 職業訓練·保育施設(美國) 등에 대한 特別償却制度가 적용되고 있다는 것을 예시할 수 있겠다.

둘째, 特別償却의 방식에 있어서 우리 나라는 「割増償却」 방식에 치우치고 있음에 비하여 다른 외국은 「初年度特別償却」 방식이 대종을 이루고 있다. 이 때문에 先進諸國은 投資가 촉진되고 技術開發, 生産性 向上 속도가 보다 빠르다 할 수 있으며, 減價償却制度의 金融機能이 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세째, 諸外國은 特別償却率 선택이 과감하고, 적극적이라는 점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의 割増償却率은 20~30%로 일반적으로 낮은 실정임에 비하여 諸外國은 평균 50% 수준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네째, 國內 低開發地域의 開發을 위해 同地域에 投資된 固定資産에 대해서는 차별적으로 우대하는 地域間差等措置를 강구하고 있음이 이색적이라고 하겠는데, 이는 英國, 西獨 등에서 그 예를 볼 수 있다.

다섯째, 特定資産에 대해서 時限法으로 과감하게 적용함으로써 稅制運用의 彈力性, 機動性を 살리고 있음도 예거할 수 있겠다.

한편 무릇 租稅制度는 그 사회의 經濟的 與件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검토해 온 特別減價償却制度 역시 그러한 基本 背景下에서 채택·운용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우리의 經濟·社會의 政策方向과 課題를 전체해 볼 때 첫째 우리가 새운 成長·發展目標의 달성을 위해서는 國內貯蓄의 강화로 投資財源을 圓滿히 確保해야 하고, 동시에 이는 그 自立度を 향상하는 방향에서 達成해야 할 課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은 企業貯蓄, 그 중에서도 특히 減價償却制度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둘째, 租稅制度의 機能을 단순한 國庫目的에서

만이 아니라, 產業政策的이며 社會·經濟的인 複合的 機能을 동시에 提高·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절실한 단계에 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도 特別減價償却制度의 金融機能과 社會·經濟政策 기능을 多角化·深化할 수 있도록 보다 能率的인 制度의 開發과 補完對策이 講究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에 그 첫째는 特別償却의 대상을 보다 다변화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租稅制度의 國庫收入 機能도 중요하나 產業政策, 經濟·社會開發 機能 強化도 긴요하고, 政府貯蓄보다는 企業貯蓄의 증대에 더욱 더 政策力點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점에서 諸外國이 일반적이며 普通的으로 採擇하고 있고, 또 緊切한 公害防止施設을 비롯하여 資源開發 關係施設, 福祉增進 關係施設 등이 特別償却의 대상으로 追加, 補完해야 할 것이다.

한편 현재 우리나라는 그 대상을 대체로 業種別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 이를 鑛業, 水産業, 製造業에 한정하고 있는데, 이외에도 外貨獲得, 原資材備蓄 등의 合理化를 위해 기타 서비스業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餘地는 많을 것이다.

둘째, 特別償却의 방식을 取得價額을 기준하여 償却하도록 하는 「初年度 特別償却制」 中心 體制로 轉換했으면 한다. 우리나라는 「割増償却」 방식 중심하에 있는데, 減價償却制度의 제일의 制度目的이 投資促進·金融機能強化에 있다고 할 때 初年度特別償却制가 보다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세째, 特別償却率을 보다 과감하게 上向調整할 必要性이 있다. 우리나라는 割増償却制度下에 있으면서 特別償却率이 대체로 20%~30%에 머물고 있는데, 이는 諸外國의 線에 비하여 소극적이고 미흡하다고 하겠다. 英國의 「自由償却制度」의 例에서 보는 바와 같은 特定分野에 대한 政策運營의 탄력성을 보일 수 없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割増償却方式일 때는 50%線, 初年度償却方式下에서는 30% 정도의 特別償却率로 조정했으면 한다.

네째, 特定目的 事業에 대한 同制度運用의 積極性, 彈力性을 부여하고 機動性を 살리기 위해서는 一定時限 規定을 두는 制度의 개발도 있음직하다. 한때 機械類의 國產化 촉진을 위해 이를 운용한 경험이 있기는 하다.